

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

(의약품, 3등급 위해성)

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- 가. 회수제품명: 락토바캡슐(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균틴달화동결건조물), 포장단위 500T, 30T
- 나.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: 제조일자 2013년 8월 8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
- 다. 제조번호: 0002, 0003, 1001, 1002, 2001, 2002, CBA301
- 라. 회수사유: 유효성 입증 부족에 따른 잠정판매중단 및 회수명령
- 마. 회수방법: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
- 바. 회수영업자: (주) 휴온스 (대표자:전재갑)
- 사. 영업자주소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21번지 판교이노밸리 C동 901호
- 아. 연락처: TEL)02-854-4700, FAX)02-6455-0740
- 자. 자료작성연월일: 2013.08.16

*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